

의안번호	제 525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월 일 (제323회)

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3년 8월 23일

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

의안 번호	52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년 8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'청원·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'에 따라 (재)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마련하고, 청원·청주통합추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승인 신청하기 전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(안) : 붙임

3. 그 간의 추진경과

- 2013. 1. 15 : 연구용역 기본계획 청원·청주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심의
- 2013. 2. 7 : 연구용역 계약체결
※ 2013. 2. 13~7. 12(5개월), (재)한국지방행정연구원, 162백만원
- 2013. 2. 15 : 연구용역 착수보고
- 2013. 3. 5 : 연구용역 사전토론회
- 2013. 4. 18 : 4개구 확정안 주민설명회
- 2013. 4. 30 : 4개구 확정안 청원·청주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심의·의결
- 2013. 5. 3~9(7일간) : 4개구 명칭 주민공모
- 2013. 5. 15 : 주민공모결과 심의 전문가회의
- 2013. 5. 23~26(4일간) : 주민여론조사
- 2013. 5. 30 : 4개구 명칭안 청원·청주통합추진 공동위원회 심의·의결
- 2013. 6. 20 : 연구용역 최종보고
- 2013. 6. 28 : 청주시의회 의견 수렴(원안의결)
- 2013. 8. 22 : 청원군의회 의견 수렴(원안의결)

4. 향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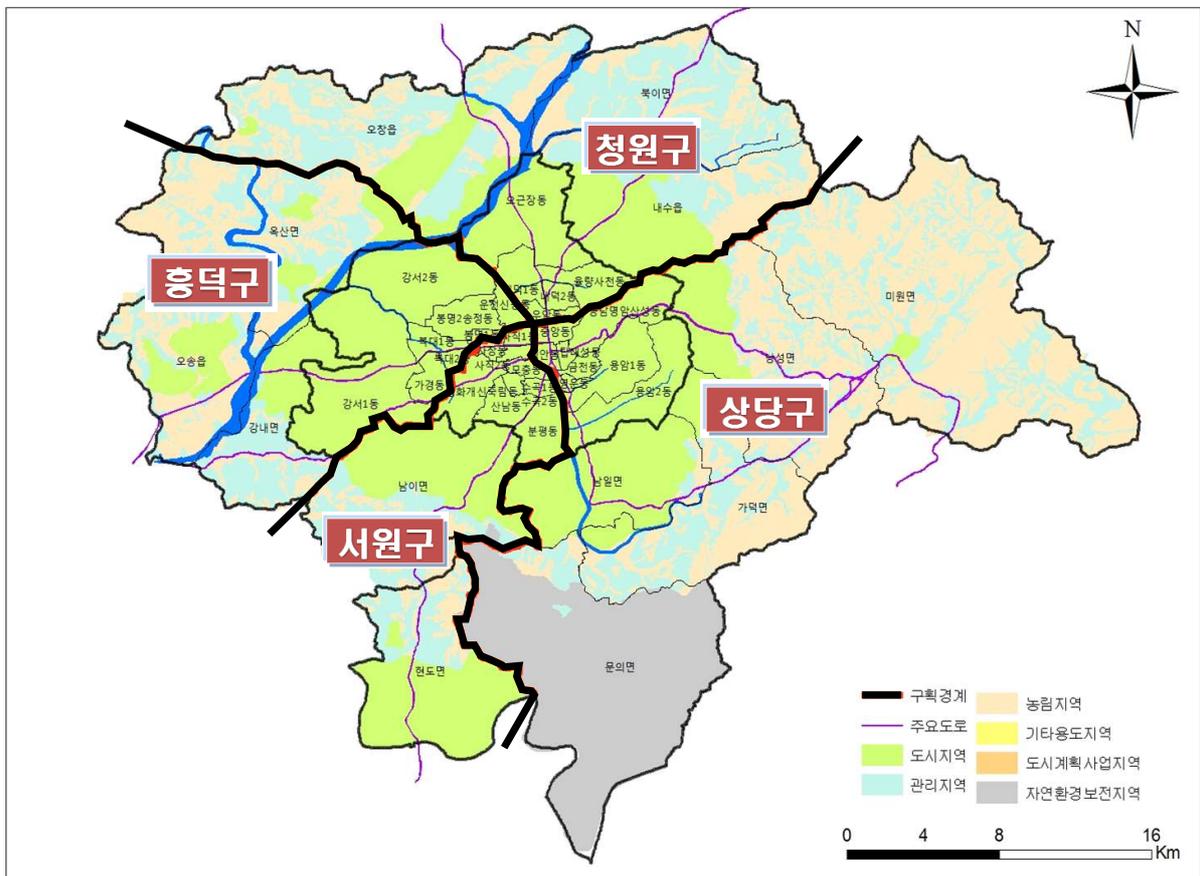
- 2013. 10월 : 안전행정부 승인 신청
- 2013. 12월 : 안전행정부 승인

5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-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(지방의회의 의견서 첨부)

통합청주시 4개구 설치 안

上黨區 (5면, 8동)	인구 179,867명, 면적 404.44km ² 남일면, 낭성면, 문의면, 가덕면, 미원면, 중앙동, 성안동, 탑대성동, 용담·명암·산성동, 금천동, 영운동, 용암1동, 용암2동
西原區 (2면, 9동)	인구 228,659명, 면적 122.59km ² 남이면, 현도면, 사직1동, 사직2동, 사창동, 모충동, 수곡1동, 수곡2동, 산남동, 분평동, 성화·개신·죽림동
興德區 (1읍, 2면, 8동)	인구 256,681명, 면적 198.27km ² 오송읍, 강내면, 옥산면, 운천·신봉동, 봉명1동, 봉명2·송정동, 복대1동, 복대2동, 가정동, 강서1동, 강서2동
淸原區 (2읍, 1면, 5동)	인구 162,422명, 면적 214.99km ² 내수읍, 오창읍, 북이면, 우암동, 내덕1동, 내덕2동, 울량·사천동, 오근장동

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

제11조(지방의회의 의견서 첨부)

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폐지·설치·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